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2013. 5

통일정세분석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2013. 5

임강택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통일연구원 제2차 「월례 북한정세토론회」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토론 내용을 반영하여 집필되었습니다.

주 제: 대북경제제재에 따른 북한의 예상 반응과 대북정책

일 시: 2013. 4. 5.(금) 15:00~18:00

장 소: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사무소

주 관: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사 회: 임강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발제자: 문덕호 (외교부 아중동국 국장),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토론자: 김도현 (기재부 대외경제국 남북경제 과장),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동수, 박형중, 이금순, 전성훈,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홍우택
(이상 통일연구원)

목 차

1. 대북제재의 현황	1
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
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	4
2.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5
가. 경제제재의 목적과 효과성	5
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7
다. 한국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10
라. 미국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12
마. 일본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16
3. 향후 전망	18
가. 단기 전망	18
나. 중장기 전망	19
4. 정책적 건의사항	21

<첨부 자료: 통일연구원 제2차 「월례 북한정세토론회」 발표 자료집>

표 목 차

<표 1> 유엔 안보리 대북경제제재안	7
<표 2> ‘5·24 조치’의 주요 내용	10
<표 3>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관련 법령	12
<표 4>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한 주요 행정명령	14
<표 5> 일본의 대북한 제재 내용과 법률	17
<표 6> 효과적인 제재방안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	22

그 림 목 차

<그림 1> 회원국 혹은 지역에서 대북한 제재관련 보고 현황	4
---	---

1. 대북제재의 현황

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 원용(비군사적 강제조치)
 - 유엔 헌장 제25조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이행할 의무(legally binding, universal implementation)”
 - 유엔 헌장 103조는 “유엔 헌장상의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유엔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추가(cumulative resolutions)되었는데, 대북제재 결의는 누적적으로 강화된다는게 특징
 - 결의 2087호에는 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캐치-올(catch-all)’ 성격의 대북수출통제 강화 등이 포함
 - 결의 2094호에서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항공·선박에 대한 제재, 북 외교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등이 추가
- *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및 825호(1993.5, NPT 탈퇴선언 재고 촉구), 1695호(2006.7, 대포동 2호 발사)는 직접적인 제재 결의는 아님.

□ 대북제재의 주요 구성

- 첫째, 북한의 핵비확산 의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무기/화생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

(abandon)할 것을 결정

-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 북한 핵실험 규탄, 추가적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요구(CTBT 조속 가입 촉구)
- 우라늄 농축을 포함, 북한의 모든 핵활동 규탄
- 북한의 NPT 및 안전조치 복귀 요구(NPT 및 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의무이행 촉구)
- 북한이 IAEA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 IAEA측에 투명성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
-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r)를 취한다고 경고

○ 둘째, 북한, 유엔 회원국의 금수의무: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금수조치(embargo)

- List Control(NSG, AG, MTCR List 원용)¹⁾
- 검색 및 차단 : 육상, 해상, 항공로의 길목을 잡고,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WMD, 재리식무기 금수 이행을 촉구
- 금융·경제 제재 :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 등 금지(대량 현금을 포함, 금융 및 기타 자산, 재원이전 금지),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회원국 영토내 북한 은행의 신규 지점, 자회사 개설 금지 등
-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 재재대상 개인 및 단체 지정

1) 핵공급국그룹(NSR: Nuclear Suppliers Group),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Australia Group),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등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서 규제되는 품목

* 미국, EU 등은 강력한 내용의 금융, 운송, 산업기자재, 특정물질 금수를 독자적으로 시행

- 셋째,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제재 : 대이란 제재 내용 일부 반영
 - 핵·미사일 품목 관련 추가 지정(NSG, MTCR 최신 List 반영)
 - ‘캐치-올(catch-all)’ 도입
 - 검색 및 차단 관련, 화물검색 의무화, 북한 선박의 항구 입항 거부,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통과 거부 등
 - 북한 외교관에 대한 주의 강화
 -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 : 보석류, 요트, 고급승용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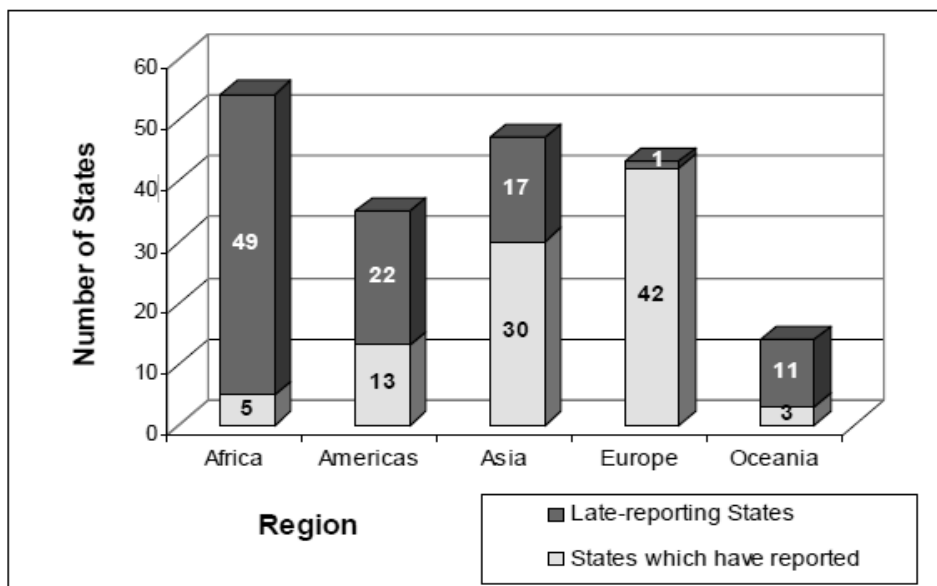
□ 개별 국가들의 양자 제재

- 한국은 금강산 관광 중단(2008.7)과 대북경제교류·협력을 제한하는 ‘5·24 조치’ (2010.5.24)를 시행
- 미국은 수출통제법, 적성국교역법 등을 오래전부터 시행해왔으며,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부과
- 일본의 경제제재는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시인 이후 공론화된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무역관계 금지, 북한선박의 입항금지, 대북송금제한 등이 포함

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

- 유엔 회원국의 보고서 제출 미흡
 - 실질적 이행의지 결여(no willingness, but report)
 - 비준수(non-compliance): 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2~3년 이후에 보고
 - 일부 동남아 국가는 사건 보고 시 자국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

<그림 1> 회원국 혹은 지역에서 대북한 제재관련 보고 현황



출처: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S/2012/422 (14 June 2012), p. 22.

- 중국의 비협조
 - 그동안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제재

에 대한 미온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자제와 냉정을 촉구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강조

- 긴 국경(1,400 Km), 해상, 공로 통제 미흡(특히, 대련항 및 북경 공항)
- 정부의 무관심과 산업자본의 사적인 이익 추구
- 북한기관 요원들에게 활동의 무대 제공

○ 북한-시리아-이란-파키스탄 간 비밀 군사 협력

- 중국과 파키스탄의 과거 군사협력
- 확산의 축(axis of proliferation)으로 핵공급 국가
-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보 공유(intelligence sharing)와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노력 부족
- 북한-이란 간 핵협력이 새로운 위협이자, 새로운 비확산의 과제로 부각

○ 핵확산 활동 관련 금융조달(proliferation financing) 억제를 위한 법령의 미비

- WMD·미사일 확산에 연루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형사처벌 부족

2.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가. 경제제재의 목적과 효과성

- 일반적으로 경제제재의 목적은 대부분 제재대상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제재국이 바라는 정치·외교·안보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

- 경제제재로 인해 제재대상국의 무역이나 금융거래에 상당한 손실이 초래되었더라도 제재국의 정치·외교·안보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성공적인 제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제재국이 공식적으로 제재대상국에 요구하는 정책의 변화가 제재국이 실제로 바라는 목적과 다를 수도 있으며, 경제제재의 실제 목표가 단순한 경고용 또는 응징용일 수도 있기 때문
- Biersteker, Eckert, and Tourinho(2012)는 지난 20년 동안 단행된 UN의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 56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²⁾
 - 강압적인(coercing) 제재 보다는 메시지 전달(signaling)이나 제약조건 부과(constraining)가 제재 대상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
 - 제재 대상(표적)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며, 제재 목적이 반영될 필요성
 - 제재 대상(표적)이 광범위할 경우 제재의 잠재력 약화
 -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
 - 제재의 순서와 시점이 중요

2) Thomas J. Biersteker, Sue E. Eckert, and Marcos Tourinho, *Designing UN Targeted Sanctions* (Geneva: the Graduate Institute, 2012), pp. 4~5.

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 주요 제재 내용

- 유엔 안보리결의에 의한 대북제재의 조항들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조항(decide)과 구속력이 약한 조항(demand, require, urge, call upon, affirm, underline)으로 구분
 - 유엔 안보리 결의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불가피

<표 1> 유엔 안보리 대북경제제재안

제재안	년도	배경	주요내용
1718호	2006 (10.14)	북한의 1차 핵실험 (2006.10.9)	▪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무기, WMD 프로그램 포기 촉구 ▪ NPT, IAEA 안전규정으로 복귀요구 ▪ 6자회담 복귀요구
1874호	2009 (6.12)	북한의 2차 핵실험 (2009.5.25)	▪ 2·13, 10·3합의 이행 촉구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동참요구 ▪ UN 회원국의 1718호 이행 촉구
2087호	2013 (1.22)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2012.12.12)	▪ 1718, 1874호의 내용을 재확인 ▪ 대량의 현금(bulk cash)에 대한 언급 ▪ 무기 개발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회원국의 수출입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조항 삽입
2094호	2013 (3.8)	북한의 3차 핵실험 (2013.2.12)	▪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 대량의 현금(bulk cash)이 북한으로 유입·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 ▪ 앞서 언급한 조치를 회피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무역 및 공적 금융 지원을 제공하지 말것을 결정. ▪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회원국 자국 내의 지사, 대표부 및 계좌 개설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대북경제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중 구속력이 강한 주요 금지 조항
 - 북한의 (소형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 거래
 - 핵 또는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의 거래 및 금융서비스, 공적금융지원, 관련 개인 및 단체 또는 그 대리인(단체)에 대한 제재
 -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³⁾
 - 선박 검색 관련 조항
- 대북경제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중 촉구 수준의 주요 조항
 -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촉구(call upon)
 - 회원국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무기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회원국이 수출과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조항 도입
 -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신규 권고를 환영하고(welcome), 회원국들이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urge)

□ 유엔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 2006년 말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조치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와 핵무기 폐기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압도적
 - 북한은 안보리결의 1874호에 의해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로 전

3) 사치품 항목 지정은 2094호부터 촉구 사항으로 도입

용이 가능한 장거리로켓 발사를 2012년 두 차례나 실행

- 북한은 2013년 1월 통과된 안보리결의 2087호에도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2월 12일 제3차 지하핵실험을 감행
- 2013년 3월 7일 안보리결의 2094호가 통과되자 북한은 정전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무효화를 선언

- 2013년 5월 유엔의 비공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유엔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를 강조
 -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프로그램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했지만, 강력한 금융제재와 무기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불법적인 행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막는데 효과를 거둠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의 시간표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⁴⁾
- 유엔 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는 공식적인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대북경제제재의 양적인 효과가 일부 확인
 - 이재호·김상기(201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수출은 제재(2006년의 1718호 및 2009년의 1874호) 이후에 감소⁵⁾
- 종합하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가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 하지는 못하였지만 제재의 ‘경제적’ 목적은 일정부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4) REUTERS, “Sanctions delay North Korea’s Atom Bomb Work, U.N. says,”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5/15/us-korea-north-nuclear-exclusive-idUSBRE94D1A120130515>>.

5) 이재호·김상기,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 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1).

- 또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는 제재의 효과성을 따지기 보다는 북핵을 폐기하라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측면이 더 중요

다. 한국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으며, 2010년 3월 천안함 피폭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를 단행
 - ‘5·24 조치’는 긴급구호 성격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은 물론 개성공단의 기존 투자를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경제 교류·협력과 일반교역을 금지
 - 이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은 공식적으로 천안함 공격 사실 자체를 부정

<표 2> ‘5·24 조치’의 주요 내용

<교역·교류중단>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 금지
- 대북 신규 투자 및 진출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주민 접촉 제한
-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
-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 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5·24 조치’는 상당한 정도로 제재의 ‘당사국 효과’를 가져다주었을 것으로 평가
 -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에 중단된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까지 고려하면 북한의 ‘외화획득 감소분’은 상당한 규모로 추정⁶⁾
- ‘5·24 조치’의 ‘제3국 효과’ 때문에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 ‘5·24 조치’로 인한 남북교역의 감소분이 중국 등 제3국과의 무역 증가로 “얼마나 쉽게 전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핵심
 - ‘5·24 조치’ 이후에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철광석 등 광산물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5·24 조치’로 인한 외화소득 감소분을 중국을 통해 보충하고 있음을 의미
 - 우리 정부의 경제제재 이후 북한경제가 특별히 경제침체 상태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도 고려 필요
 - 다만, 수출선(輸出先)을 대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교역조건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고통을 준 것으로 평가
- 경제제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 일반적으로 제재국과 제재 대상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클수록 제재국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6) 북한의 경제적 손실은 약 16.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김중호,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대북 정책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서울: 수출입은행, 2012), p. 57.

- 대북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 필요

라. 미국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1950년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각 조치들이 매우 촘촘하게 서로 얹혀있어서 이 모든 제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미국은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한바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대북제재조치의 실질적인 효력 발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표 3>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관련 법령

년도	제재 원인	제재 관련 법률	비고
1950	한국전쟁	수출통제법	▪ 1969년, 1979년 수출관리법으로 변경
1950	한국전쟁과 중국의 참전	적성국교역법	▪ 해외자산통제규정으로 중국과 북한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 제재
1961	공산주의 국가 원조금지	대외원조법	▪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 명문화
1986	공산주의 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수출입은행법	▪ 수출입은행의 보증과 보험, 신용 제공을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내용

년도	제재 원인	제재 관련 법률	비고
1988	KAL기 폭파로 인한 테러지원국 명단 등재	수출관리규정의 교역통제물품목록 (Commerce Control List)	▪ 국가안보, 대외정책, 핵확산 금지 등을 목적으로 특정한 수출, 재수출 및 특정행위에 대한 통제 ▪ CCL 품목은 북한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 ▪ 무역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출금지, 대외원조 금지 등
2005	2002년 2차 북핵위기	애국법(Patriot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 BDA의 북한자금 동결조치 ▪ 8개의 북한기업을 대량살상무기 및 이동수단 확산대상자로 지정하고 개인 간의 거래 금지 및 자산동결
2006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의 미국과의 관계 긴장	해외자산통제규정	▪ 미국기업, 미국거주 기업들이 북한선적으로 등록한 선박을 소유, 임차, 운영을 금지 및 보험가입 금지
2007	UN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수출관리규정(EAR) 의 개정	▪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출처: 양문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과정과 해제의 경제적 효과,” 『북한 연구학회보』, 제12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08), pp. 215~219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작성.

-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주로 법률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의 형태로 진행
 - 2008년 6월 27일에 행정명령 13466호, 2010년 8월 30일 13551호를 발표

<표 4>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한 주요 행정명령

번호	일시	주요 내용
13382	2005.6.28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를 위해 관련국가 및 협력자들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대상국은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포함한 포괄적 대상
13466	2008.6.26	▪ 북한관련 자산의 동결 유지, 미국인의 북한 선박 소유 및 보유, 운영 금지 등
13551	2010.8.30	▪ 행정명령 13466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상황의 범주가 확대, 북한의 위협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 ▪ UN 결의안 1718, 1874에 반하는 불법적 행위가 확산되는 것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목표. 북한의 군수품 밀거래, 사치품, 돈세탁,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의 제재를 목표로 함.

출처: 김상훈,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주요내용,” 『북한경제리뷰』, 9월호 (KDI, 2010).

- 이러한 행정명령은 필요시 제재 해제 과정이 단순하며, 법률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 하지만 미국 법률에 의해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 유엔 안보리의 1718호의 발의 이후에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근거하는 법률은 거의 없으며, 다만 인권관련 법률인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⁷⁾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제재를 지속

7) 국제종교자유법에서는 북한을 2001년부터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고, 경제제재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은 2003년부터 북한을 가장 심각한 위반그룹(Tier 3)으로 분류하고 해외지원, 문화교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을 금지

- 또한 행정명령을 통한 북한의 제재도 병행하고 있는바, 이는 과거 BDA 경험이 북한의 경제제재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 농후
- 비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제시한 다양한 외교·안보적 목적이 명시적으로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당사국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무역 단절과 최혜국 대우 적용 제외가 북한 경제의 대외 교류·협력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
-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금융기관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제재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금융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미국은 국내법(애국법 311조)에 의거하여 마카오에 있는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BDA와 거래하고 있던 대다수 은행들은 미국은행과의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BDA와의 거래를 즉각 중지하였고,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에 개설된 북한 계좌도 동결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단행
 - 이후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제재조치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
 -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BDA 금융제재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제재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마. 일본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 현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대북경제제재는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생존 일본인들을 일본에 송환한 이후에 악화된 여론에 밀려 단행
 - 요코타 메구미의 가짜 유골 문제와 2006년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및 거듭된 핵실험으로 더욱 강화
 - 현재 일본은 평화 시에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조치의 거의 대부분을 이미 시행한 것으로 평가
- 주요 제재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주로 무역활동 규제와 투자규제로 나뉘어 진행
 - 대표적인 무역제재의 근거로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한 무역거래규제, 무역제한 등의 조치가 단행
 - 또한 투자규제는 송금규제, 자본거래규제, 대외직접투자규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북한 선박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현실적으로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시행

<표 5> 일본의 대북한 제재 내용과 법률

시기	주요 배경	주요 법률	주요 내용
2003.6	북한 핵·미사일 및 납치문제 해결	항만국 통제 (Port State Contro: PSC)	▪ 니카타에 입항하는 만경봉 92호 의 감시와 안전검사 강화(2002년 대비 약 4배 증가: 2002년 40회, 2003년 6개월간 78회)
2004.2	납치문제 해결 압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기존 법률은 UN 결의안에 의해 서 송금 제한, 하지만 개정은 일 본의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
2004.6	납치문제 해결 압박	특정선박의 입항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
2005.3	선박자초시 철거비용 회수 명목: 실제로는 납치문제 해결	선박유독손해배 상보장법	▪ 북한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시 키기 위한 조치(북한 선적의 보 험가입률이 2.8% 정도: 2002년)
2006.10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의 일본상공 통과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모든 북한 물품의 수입금지 ▪ 북한 국적자의 입국금지 ▪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본 물품의 수출금지

출처: 윤석상,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함의,” 『평화학연구』, 제9권 3호 (한
국평화연구학회, 2008), pp. 194~199를 참조하여 재작성.

- 그러나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도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유인·압박하
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일본 대북경제제재조치의 ‘당사국 효과’는 상당했으나, 제3국 효
과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3. 향후 전망

가. 단기 전망

- 유엔 차원의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유보적인 태도로 인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핵무기 폐기라는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중국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에 참여하는 정도가 예전에 비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이 받는 충격이 예전에 비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
 -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에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주변국의 군비경쟁, 군사적 개입,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차단 등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 유엔 차원의 제재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
 -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일탈행동에 대한 제재를 결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
-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우리의 ‘5·24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굴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등 이번 기회를 통치기반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한국정부의 경제제재 해제라는 양보를 얻어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

-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는 북한이 이미 적응을 마친 상태로 평가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재조치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평가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경우 북미경제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위상에 비추어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활용
 -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조치의 직접적인 효과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BDA 방식의 제재조치가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해외에 은닉한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을 압박
-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추가될 가능성
 - 물론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대결적인 국면이 머지않은 장래에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
 - 그러나 주요 관계국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국면으로의 전환과 그 협상과정이 순탄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나. 중장기 전망

-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전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김정은 체제의 핵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

- 먼저 중국의 경우 나름대로의 이유로 최근의 대북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가치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
-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 체제가 지니고 있는 통치기반의 불안정성을 의식해서 강한 지도자상을 과시하려는 경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당분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경우에는 쿠바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장기화된 경제제재가 북한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제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가시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경우에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지금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할 경우 보다 강화된 형태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제재 추진 예상

○ 결국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와 이에 따른 제재의 완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한동안 중단될 경우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

4. 정책적 건의사항

-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
 - 대북제재가 추구한 북한의 핵개발 억제라는 정치·외교적 목표 달성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 대북제재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을 담고 있어 최소한 상징적인 효과는 기대
- 또한 경제제재의 유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정치·경제적 적응력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
 - 경제제재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제재대상국의 능력과 대체수단의 확보 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 필요⁸⁾
 - 이와 함께 제재대상국이 경제제재를 경제문제의 핑계거리로 사용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 필요⁹⁾
- 향후 새로운 대북경제제재 도입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징벌적 성격의 경제제재가 가지는 ‘상징성’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
 - 제재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효과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최소화
 - 대북경제제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장치의 마련

8) 윤석상,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함의,” p. 189.

9) 위의 글, p. 190.

- 제재를 단행하면서 제재의 시행기간과 연장 조건 등을 명시함으로써 적절한 출구를 마련
- 이상과 같은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제재방안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매뉴얼)를 마련할 필요¹⁰⁾
- 여기에 목표와 대상, 제재의 종류, 정책 수단, 실행 방안, 효과 분석, 종료 조건 등 포함

<표 6> 효과적인 제재방안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

단계	주요 체크 항목
목표(Purpose)	▪ 제재의 목표는 무엇인가? - 강제(coerce): 강압적 방식으로 제재 대상국의 행동 변화 유도 - 제한(constrain): 핵심적 자원(예를 들면, 금융조달, 무기, 재화/기술, 전문화된 기술)에 대한 접근권 제한 - 신호(signal): 국제적 규범의 침해 활동에 대한 비난 혹은 고립화 및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사전 경고 ▪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할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과 규범 (Objective and Norms)	▪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것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리즘, 군사적 분쟁, 인권 침해, 인도주의적 위기, 시민권 보호 등 ▪ 어떤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기 위해 제재를 이용할 것인가? - 비확산, 대테러리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보호(인권침해 예방, 대량학살, 성적·성별 혹은 아동에 대한 폭력 등
대상(Target)	▪ 의도된 제재 대상은 누구인가? - 정부 혹은 지도자, 정권 지지세력, 반군세력, 테러리스트 그룹, 금지된 행동 유발자, 주목하는 정책의 책임자(인권 침해와 폭력에 대한), 제재대상의 가족 구성원, 지원자(금전적 혹은 물질적), 유엔제재 위반자들

10) Thomas J. Biersteker, Sue E. Eckert, and Marcos Tourinho, *Designing UN Targeted Sanctions*, pp. 24~28.

단계	주요 체크 항목
	▪ 제재 대상들은 어떻게 위협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제재의 목적을 촉진시키는지? ▪ 제재 대상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가 획득 가능한가? 그리고 제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제재 대상국의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가? ▪ 제재 대상의 명단을 어떻게 널리 알릴 수 있을까? ▪ 제재 대상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있는가?
제재 유형 (Type of Sanction)	▪ 제재 대상이 제재 받을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무기, 확산과 관련 이중 요도의 재화나 기술 등)이 필요한가? ▪ 어떤 자연 자원(다이아몬드, 목재, 오일, 금 등)이 제재 받을만한 행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수요를 보장하는가? ▪ 제재 대상의 경제적 특징(특정 상품에 대한 의존도, 경제통합의 정도, 대출, 보험 서비스에 대한 의지 등)은 무엇이며, 다른 금융 제재가 가능한가? ▪ 비행 금지가 목적 달성을 촉진할 것인가? ▪ 외교적 제재(여행 제한, 대사관 폐쇄, 외교관 수 감소, 비자 발행의 제한 등)가 바람직한가? ▪ 개인에 대한 제재의 경우, 금융기관에 맡긴 자산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가? 국제 여행을 자주 다니는가?
지역 기구와 제재	▪ 지역의 어떠한 조직과 연계되었나? ▪ 만약의 지역차원의 제재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유엔 제재가 그들과 어떻게 조응하는가?
다른 정책수단/ 조율 혹은 대안	▪ 어떤 다른 정책 수단들(외교적 협상, 유엔 평화유지군, 무력 사용,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제재를 수행하는데 사용 가능한 대안은? ▪ 제재가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 ▪ 제재가 다른 노력과는 어떻게 연계 추진되어야 하는가? 그들은 보완적일까 아니면 충돌 가능성이 있을까? ▪ 제재의 목적을 위하여 어떤 다른 조직(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국제경찰 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단계	주요 체크 항목
제재의 수행	▪ 제재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정책 수단들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제재 위원회, 이행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 패널, 유엔 안보리에 의한 지명, 강압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위반이나 불응에 대한 대처방안, 사용 가능한 자원 등 ▪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적절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지원이나 훈련이 필요한가? ▪ 어떤 강제 사항이 요구되는가? ▪ 어떤 사적 부문들이 포함되며, 어떻게 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가?
효과와 대응	▪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제재의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 제재 대상국이 어떤 보복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또는 어떻게 제재의 충격을 비껴가거나 감소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	▪ 잠재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 국가 통치력의 강화 또는 정치적 분열, 내부 단합력 증가, 부패와 범죄의 증가, 자원의 유용, 이웃국가에 부담 증대, 인도주의적 충격, 인권 침해, 규제와 강제력의 증강, 유엔의 신뢰도 훼손 등
회피	▪ 어떻게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까? - 제3국으로의 무역선 전환, 정체성의 위장, 유명회사 설립, 사적 계약(암시장), 안전한 피난처, 대체 자원(예, 다이아몬드), 가족 구성원, 물자의 비축, 위장 선박 사용 등 ▪ 회피 행위를 어떻게 관리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
제재의 종료	▪ 제재의 종료와 중지를 위한 특별한 요건은 무엇인가? ▪ 제재의 종단을 포함한 조정작업을 위하여 어떤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까?
현재 남아있는 제재들	▪ 제재가 어떻게 업데이트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제재를 위한 대안	▪ 기존의 레짐에 추가하는 형식을 택하는 대신에 제재 레짐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처: Thomas J. Biersteker, Sue E. Eckert, and Marcos Tourinho, *Designing UN Targeted Sanctions*, pp. 24~28; 임강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 및 실효성,” 『남북관계, 위기 속에서 전환을 모색하다』 (2013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2013.4.25) 자료집), pp. 118~120에서 재인용.

- 마지막으로, 향후 현재의 대결국면이 남북 당국간의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 정부의 대북경제제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
-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 무조건적인 경제제재 해제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

〈첨부 자료: 통일연구원 제2차 「월례 북한정세토론회」 발표 자료집〉

발제문 1: UN안보리의 북한 및 이란 제재동향

문덕호(외교부 아중동국 국장)

1.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틀

- Pu 생산 프로그램(영변 핵 시설): NPT 안전조치 (IAEA 안전조치협정),
미·북 제네바 합의 (AF),
6자회담 (9·19 공동선언/2·13/10·4 합의)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우라늄 농축 공장 등): 2002년 10월부터 논란이 되었으나,
IAEA, 안보리에서 논의하지 못함.
- 핵실험장, 핵무기 제조 시설: 미공개로 인해 논의가 되지 못함.
- 북한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2006년부터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1718, 1874, 2087,
2094)
- NPT, IAEA 안전조치협정, 다자 수출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는
북한/이란의 핵개발을 막는데 역부족(강제성 결여, 중국·러시아의 비협조)
- 북한 핵폐기, 한반도 비핵화 개념 정의
 - CVID (dismantlement, 폐기) ← 불능화 ← 동결
 - CVIA (abandon, 포기)
 - denuclearization
 - 핵 폐기 목표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범위 (Scope)에 대한 논란

2.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 원용(비군사적 강제조치)
 - 유엔 헌장 제25조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이행할 의무” (legally binding, universal implementation)
 - 유엔 헌장 103조는 “유엔 헌장상의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유엔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
- 대북, 대이란 제재 결의는 WMD 및 탄도미사일 비확산 결의(결의 1540호와 연계)
- 결의 1718호(2006.10): 1차 핵실험
결의 1874호(2009.5): 2차 핵실험
결의 2087호(2012.12): 은하 3호 발사
결의 2094호(2013.2): 3차 핵실험
 - cumulative resolutions : 제재조치가 진화
 - 825호(1993.5, NPT 탈퇴선언 재고 촉구), 1695호(2006.7, 대포동 2호 발사)는 직접적인 제재 결의는 아님.
 -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도 제재 결의는 아님.
- (북한의 핵비확산 의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무기/화생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abandon)할 것을 결정
 -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 북한 핵실험 규탄, 추가적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요구(CTBT 조속 가입 촉구)
 - 우라늄 농축을 포함, 북한의 모든 핵활동 규탄
 - 북한의 NPT 및 안전조치 복귀 요구(NPT 및 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의무이행 촉구)
 - 북한이 IAEA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 IAEA측에 투명성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
 -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r)를 취한다고 경고
- (북한, 유엔 회원국의 금수 의무)
 -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금수조치(embargo) : List Control(NSG, AG, MTCR List 원용)

- 검색 및 차단 : 육상, 해상, 항공로의 길목을 잡고,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WMD, 재리식무기 금수 이행을 촉구
- 금융·경제 제재 :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 등 금지(대량 현금을 포함, 금융 및 기타 자산, 재원이전 금지),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회원국 영토내 북한 은행의 신규 지점, 자회사 개설 금지 등
-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 제재대상 개인 및 단체 지정
 - ※ 미국, EU 등은 강력한 내용의 금융, 운송, 산업기자재, 특정물질 금수를 독자적으로 시행
-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제재강화 추세): 대이란 제재 내용 일부 반영
 - 핵·미사일 품목 관련 추가 지정(NSG, MTCR 최신 List 반영)
 - Catch-all 도입
 - 검색 및 차단 관련, 화물검색 의무화, 북한 선박의 항구 입항 거부,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통과 거부 등
 - 북한 외교관에 대한 주의 강화
 -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 보석류, 요트, 고급승용차 등

3. 전문가 패널 활동

- mandate: 북한제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연례보고서(Final Report)작성
 - 주로 non-compliance 사건 조사(like inspectors)
 - 북한 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다는 무기 밀매, 불법 구매 사건 조사에 집중
 -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위협에 대해 상이한 해석
 - 결과적으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핵폐기 방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관련 물자의 이동을 막는 제재결의 이행에 중점
- 중국 패널위원: 내부 협의, 보고서 작성 등에 방해
 -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언제나 과소평가하고, 100% 증거를 요구
- 우리 위원: WMD 프로그램의 진전사항을 visible하게 만들면서, 불법거래에 연루된 개인, 단체, goods 관련 정보 제공

-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사항을, 유엔 공식문서에 기록으로 남기는 과제
- 북한의 Uranium Enrichment Workshop 공개(2010.11)에 따른 특별보고서, 2010년 연례 보고서 미공개
 - 중국 위원의 반대(조건부 서명 또는 서명 거부)

4.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

- 유엔 회원국의 보고서 제출 미흡
 - 양적·질적인 문제(no willingness, but report)
 - non-compliance 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2~3년 이후에 보고
 - 일부 동남아 국가는 사건 보고서 자국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
- 전세계에 퍼져있는 북한의 구매망과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정교한 기술 구사
- 중국의 비협조
 - sanction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제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언제나 자제와 냉정 촉구, 6자회담 강조 등
 - 국경(1,400 Km), 해상, 공로 통제 미흡
 - 특히, 대련항 및 북경 공항 문제
 - export control failed
 - 정부의 무관심과 industry의 탐욕
 - 중국 협력사 및 북한 agents 활동 무대
-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출 통제 미흡
 - 두바이 등 Mega, Free Port에서의 Transit/Transshipment 문제
- 과거 Khan Network 암약, 일본/유럽국가 connection
 -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Khan이 북한, 이란, 시리아에 원심분리기 설계도, 기술 등 제공
- 북한-시리아-이란-파키스탄 간 비밀 군사 협력

- 중국과 파키스탄의 과거 군사협력
- Axis of Proliferation(nuclear supplier)
- intelligence sharing과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노력 부족
- news reports and evidence, but no smoking gun
- 북한-이란 간 핵협력이 새로운 위협, 새로운 비확산 과제로 부각
 - ※ 2012.9.1 김영남, 이란 최고지도자, 대통령 면담(국방장관, 원자력청장 배석)
 - : 과학기술분야 협력 증진에 관한 MOU 체결

- Proliferation Financing 관련 법령 미비
 - WMD, 미사일 확산에 연루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부족

5.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방안

□ WMD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개인·단체 추가 지정

-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지정 필요(이란에 비해 숫자가 적음)

(개 인)	(단 체)
·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 현영철 인민군 총참모장 ·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 · 홍승무 노동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 김계관 외무성 제1부장 · 백세봉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 조선 무역은행 · 39호실(노동당) · 정찰총국(총참모부) · 무역은행(내각) · 일심 국제은행(인민무력부) · 조선 대성은행(당39호실) · 제2경제위원회(노동당) · 제2자연과학원(노동당) · 기계공업부(노동당) · 대외기술무역센터(국방위원회)

※ 미국은 2013.3.12 백세봉, 주규창, 박도춘, 김격식을 추가 지정

□ Embargo List 추가(우라늄 농축/재처리 프로그램: 금지)

- 기존 List
 - NSG Trigger List: Rotating/ Statistic Components, Auxiliary system
 - NSG Dual-use Items: Industrial Equipment/ Materials
 - Yun Ho Jin, Namchongang Trading Corporation(NCG)

- Tentative List(Choke Points): 가스 원심 분리기 품목
 - Maraging steel
 - High-strength aluminum alloy
 - Vacuum roots pumps
 - Vacuum measuring equipment(pressure transducers and piranni gauges)
 - Flow-forming machines: *controlled by the NSG
 - Converters/inverters
 - Fibrous or filamentary materials, and prepregs
 - Filament winding machines
 - Semi-hard magnetic alloys in thin strip form: *not controlled

- 중국 등 인접국의 대북 금수 조치 이행
 - 국경 및 세관 통제, 수출 통제체제 강화
 - Catch-all, dual-use items with lower items
 - Industry's early cooperation

 - Transit/ Transshipment 검색 강화

 - 역내 국가 공조(law enforcement authorities 협력)

- 핵 비확산 레짐 Mandate 갱신 문제
 - NPT/ IAEA Safeguards: 핵물질 군사적 전용 탐지
 - Export Control regimes: 보편성 결여(1540호와 연계)
 - IAEA-NSG-MTCR 협력: 공조체제 수립 필요
 - Counter-proliferation efforts: PSI 미가입(중국, 이란, 말레이시아, 시리아 등)

- 유엔 체제 밖의 독자적인 제재 요소를 반영시키는 노력
 - 미국, EU 등의 독자적인 제재 요소를 안보리 결의에 반영
 - 금융제재 강화(예: BDA 방식 제재, Secondary Boycott 등)

안보리 결의 (1718호·1874호·2087호·2094호) 내용 비교

구 분	1718호(06.10.14)	1874호(09.6.12)	2087호(13.1.22)	2094호(13.3.7)
현장 제7장 원용	· 현장 제7장 제41조 원용	· 현장 제7장 제41조 원용		· 현장 제7장 제41조 원용
북한의 핵비확산 의무	·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pp.4) · 북한 핵실험 규탄, 추가적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요구(op.1,2) · 북한의 NPT 및 안전조치 복귀요구 (op.4) ·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결정하고 북이 NPT 및 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 (op.6) · 북한이 IAEA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 IAEA측에 투명성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 (op.6) ·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 중단 및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재확립 요구(op.5) · 북한의 여타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결정 (op.7) · 북한에 대한 6자회담 복귀 및 9.19 공동성명 이행 촉구(op.14)	※ 추가된 주요 내용 · 북한 및 회원국에 대한 결의 1718호 완전 이행 요구(op.4, op.7) · 북한에 대한 CTBT 조속 가입 촉구 (op.29) · 참가국들이 9.19 공동성명(2006), 2.13 및 10.3 공동문건 이행 촉구 (op.30)	※ 추가된 주요 내용 · 6자회담 지지 재확인 및 재개 촉구, 9.19 공동성명 참여국들에 대한 이행 노력 강화 촉구(op.15) ·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임을 천명(op.19) ※ 2012.4월 의장성명에는 ‘상응한 조치(take action accordingly)’로 표현	※ 추가된 주요 내용 · 우라늄 농축을 포함하여 북한의 진행중인 모든 핵활동 규탄(op.5) ·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할 것임을 천명(op.36)

구 분	1718호(06.10.14)	1874호(09.6.12)	2087호(13.1.22)	2094호(13.3.7)
금수 조치 (수출통제를넘는 금지)	·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아래 품목의 공급·판매·이전 금지(op. 8(a)) (i) 유엔 재래식무기등록제도(UNRCA)상 7대 무기(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관련물자·부품 (ii) △핵관련 NSG 통제품목, △미사일 관련 MTCR 통제 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AG 통제품목, △여타 안보리/제재위 지정 WMD·미사일 관련품목 (iii) 사치품 · 북한의 위 (i), (ii) 품목 수출 금지 및 회원국 국민의 북한으로부터의 동 품목 조달 금지 (op. 8(b)) · 금수품목 관련 대북 기술훈련, 조언, 서비스 및 지원 금지(op. 8(c))	·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물자(all arms and related materiel) 수출 금지(op.9) ·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 (소형무기 제외) 및 관련물자 공급·판매·이전 금지(op.10) · 북한에 대한 소형무기 공급·판매·이전 관련 회원국들의 주의 촉구 및 소형무기 공급·판매·이전시 최소한 5일 전 제재위에 이를 통보할 의무	· 제재대상 지정 개인·단체가 특정 품목 이전의 발원자, 의도된 수령인 또는 중개인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어떠한 품목의 이전도 1718, 1874호에 의해 금지됨을 명확화(op.9) · 1718, 1874호상 금지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품목(any item)의 공급·판매·이전도 우려하며, 이에 대해 회원국이 적절한 조치('catch-all')를 취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op.12)	·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여타 활동 또는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다고 회원국이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any item)에 대해서도 공급·판매·이전을 방지(prevent)할 것을 촉구 및 허용(op.22) ↳ "catch-all" 수출통제 · 제재위에 대해 동 조항 관련 이행안 내서(IAN) 발간 지시 · 1718호 op.8(c)(대북 기술지원 금지)를 금번 결의 20항(추가지정 품목, 22항(catch-all)에도 적용 · 금수품목의 중개(brokering) 서비스에도 동 금지 의무 적용
검색 및 차단	· WMD 및 관련물자의 불법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회원국들이 자국 법령·국제법에 따라 북한행·발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조조치(cooperative action)를 취할 것을 촉구(op.8(f))	· 금지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국내·국제법에 따라 항공 및 공항 등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행·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op.11) · 금지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회원국들이 공해상에서 기국 동의하에 선박을 검색하도록 촉구(op.12) · 기국이 공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국이 적절한 항구로 유도시켜 검색할 의무(op.12-13) · 금지품목 발견시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압류·처분할 의무(op.14) · 검색, 압류·처분, 검색 거부 등 관련 사항의 제재위 보고(op.15-16) · 금지 품목 적재 의심선박에 대한 연료공급 등 지원 서비스(bunkering service) 금지 의무(op.17)	· 공해상 선박이 기국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거부하거나, 북한이 기국인 선박이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제재위원회가 이행안내문(IAN)을 발간할 것을 지시(op.7) · 압류 품목 처분 방식에는 폐기, 사용 불능화, 저장 또는 출발지·목적지 국가가 아닌 여타 국가로의 이전 등을 포함하되, 이러한 방법들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화(op.8)	· 금지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국내·국제법에 따라 항공 및 공항 등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행·발 또는 북한·북한 국민이 중개·알선한 화물 검색 의무화(op.16) · 공해상 선박이 기국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거부하거나, 북한이 기국인 선박이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거부할 의무(op.17) · 검색 거부 사례를 신속히 제재위에 보고할 의무 · 금지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그러한 항공기의 자국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op.18) · 항공기·선박의 명칭 변경 및 재등록을 포함하여 제재 회피·결의 위반 목적의 북한 항공기·선박의 이전에 대한 정보를 제재위에 보고할 것을 요청(op.19)

구 분	1718호(06.10.14)	1874호(09.6.12)	2087호(13.1.22)	2094호(13.3.7)
금융·경제 제재	· 안보리/제재위가 지정하는 북한의 핵·기타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지원을 제공한 개인·단체에 대해 이들이 소유·통제하는 자금·금융자산·경제재원을 동결할 의무 - 기본경비 및 예외적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결의 이전 설정된 법적 담보권과 관련된 경우 등 예외(op.9)	· 핵·탄도미사일·여타 WMD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 또는 금융 및 기타 자산·재원 이전 금지 촉구(op. 18) - 금융자산의 동결,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등 포함 ·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 체결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노력 촉구(op. 19) - 인도·개발·비핵화 촉진 목적 예외 · 핵·탄도미사일·여타 WMD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촉구(op. 20)	· 핵·탄도미사일·여타 WMD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거래 금지(1874호 op.18) 관련, 회원국의 강화된 주의(vigilance) 촉구(op.6) - 자국민, 자국 영토 내 개인, 자국 금융기관 및 기타 단체의 북한 금융기관 관련 활동에 대한 감시(monitoring) 포함 ·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bulk cash) 이용수법 개탄(op.12) · 1718, 1874호에서 부과한 조치로 인한 계약 및 거래 불이행 관련, 북한 및 북한 내 개인·단체, 제재대상 지정 개인·단체 등에 의한 청구(claim)가 성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op.13)	· 1718호 op. 8(d)(자산동결)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를 대신하여/이들의 지시 하에 활동하는 개인·단체 및 △이들의 소유·통제하의 단체에도 적용(op.8) ·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 및 대량 현금(bulk cash)을 포함한 금융 및 기타 자산·재원 이전 금지 의무화(op.11) - 현금 수송자(cash courier)를 포함한 현금 이전에도 11항 적용(op.14) · 회원국 영토 내 북한 은행의 △신규 지점·자회사·대표사무소 개설 금지 및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의 신규 합작투자, 소유권 취득, 환거래 관계 유지 금지 촉구(op.12) · 회원국 내 금융기관의 북한 내 대표사무소·자회사·은행계좌 개설 금지 촉구(op.13) ·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의무화(op.15)
여행금지/기타	· 안보리 또는 제재위가 지정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 프로그램 관련정책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입국 및 통과 금지(op.8(e)) - 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사안별로 결정하거나, 예외 적용이 결의 목적을 강화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외(op.10)	· 확산 민감 핵활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국민의 또는 자국 영토내 북한인 대상 전문 교육·훈련 제공 금지 및 관련 주의 촉구(op. 28)	· 제재대상 지정 개인·단체를 대신하여 또는 이들의 지시하에 활동하는 개인의 회원국 영토 입국 및 경유시 주의(vigilance) 및 제한(restraint) 촉구(op.12) · 국제기구들이 자신의 북한 관련활동이 1718, 1874호와 반드시 부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op.11)	· 1718호 op. 8(e)(여행금지)를 △제재대상 지정 개인·단체를 대신하여/이들의 지시 하에 활동하는 개인 및 △제재 회피·결의 위반을 지원하는 개인에게도 적용(op.10) - 해당 개인이 북한 국민인 경우 북한 송환을 위해 추방할 의무 · 북한 외교관(diplomatic personnel)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여타 활동 또는 제재 회피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op.24) - 북한이 「외교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을 우려(pp.5)

구 분	1718호(06.10.14)	1874호(09.6.12)	2087호(13.1.22)	2094호(13.3.7)
제재 대상 (개인, 단체, 품목, 사치품) 추가·확대	※ 보리/제재위가 제재 대상(개인·단체·품목·사치품)을 지정할 근거 마련	· 제재위원회에 추가 제재대상 품목·단체·개인 지정 지시(op.24) -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 조정 작업 완료 및 안보리 보고 - 동 기한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안보리가 위원회 보고서 접수 후 7일내 조정조치 완료 · 해관련 통제품목 리스트를 2007. 11월 기준 NSG 리스트로 갱신(op.23)	· 제재대상으로 개인 4명 및 단체 6개 추가 지정(op.5(a)) ※ 부속서로 포함 · 핵·미사일 관련 금수목록 갱신: NSG·MTCR 최신 목록 반영(op.5(b))	· (개인·단체) 개인 3명, 단체 2개 추가 지정(op.8, 9) · (품목)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품목 8개 추가 지정(op.20) ·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op.23) - 보석류, 요트, 고급 승용차 등 ※ 부속서(I-IV)로 포함 · 제재위가 결의 채택 후 12개월 내 NSG·MTCR 목록을 검토 및 갱신하도록 지시 (op.21)
국별 이행보고	·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 제재 이행 조치현황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 (op. 11)	· 결의 채택 후 45일 이내 제재 이행 조치 현황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 (op.22)	· 1718, 1874호 이행보고서 미제출 회원국에 대해 제출 촉구 / 여타 회원국에 대해 추가 이행정보 제출 장려 (op.10)	·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 제재 이행 조치 현황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op.25)
제재위원회 · 제재 이행 메커니즘	· 1718 위원회(제재위원회) 설치 및 활동(op. 12) - 제재 이행 관련 회원국에 정보 요청 - 위반사례 조사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 예외 요청(op.9, 10) 검토 및 결정 - 제재대상 개인·단체·품목(op 8(d), (e)) 추가지정 - 결의 이행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 매 90일마다 안보리에 활동 보고	· 제재위원회는 1718호 및 동 결의의 완전 이행을 위한 노력 강화(op.25) - 아웃리치, 대화, 지원·협력 관련 활동계획을 7.15 까지 안보리 제출 - 회원국이 제출한 보고서 검토 · 1년 임기의 전문가패널(7인 이내) 설치 (op.26) - 위원회 활동 지원 - 회원국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검토 및 분석 (특히 불이행 사건 관련) - 제재위원회에 권고 - 30일내 최종보고서를, 활동 종료 30일 이전 최종보고서를 제재위에 제출	· 제재위원회가 보고된 위반 사례를 검토(review)하여 제재 회피·결의 위반을 지원한 개인 및 단체의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op.12)	· 결의 불이행에 대한 정보 제공 촉구 (op.26) · 제재위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여타 활동 또는 제재 회피에 기여한 어떠한 개인·단체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결정(op.27) · 전문가패널 임기를 결의 채택 후 13개월 이후까지 연장(op.27) - 결의 채택 후 12개월 이내 패널의 임무(mandate) 검토 및 임기 추가 연장을 위한 조치 - 전문가 패널 인원 확대(7→8)

발제문 2: 대북경제제재 효과에 대한 토론과 향후 전개과정 전망

장형수(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본 자료의 대부분은 2013년 4월 제1차 통일연구원 「월례 북한정세 토론회」 발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장형수, “대북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호의 주요 내용을 요약 또는 일부 전재하였음.

1. 들어가며

- 북한은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및 2094호(2013년)로 대표되는 다자간 경제제재와 함께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는 양자 간 대북경제제재를 받고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는 국가(제재국)가 제재를 당하는 국가(제재대상국)와의 통상적인 무역 및 금융관계를 단절하거나 단절할 것을 위협하는 정부 차원의 의도적인 행위를 지칭
- 양자간 대북제재는 제재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참여국가 간 협력과 조율이 필요한 다자간 경제제재보다 현실적으로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 다자간 대북제재는 그 참여국가 간 협력과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제재 대상국이 제재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무역과 금융거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양자간 경제제재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 본 발제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과정을 전망해보기로 함.

2.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2.1. 경제제재의 목적과 효과성

- 일반적으로 경제제재의 목적은 대부분 제재대상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제재국이 바라는 어떤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즉, 경제제재의 성공 여부는 경제제재로 인해 과연 처음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로 평가
 - 경제제재로 인해 제재대상국의 무역이나 금융거래에 상당한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이것도 경제제재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성공적인 제재라고 할 수 없을 것임.
 - 그런데, 제재국이 공식적으로 제재대상국에 요구하는 외교정책 또는 대외정책이 제재국이 실제로 바라는 목적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며, 경제제재의 실제 목표가 단순한 경고용 또는 응징용일 수도
 - 따라서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한 뒤 그 효과를 분석하여야 함.
- 본 자료에서는 대북경제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제재국 정부가 밝힌 공식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외에도 추정가능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목표의 달성 여부도 분석하고자 함.
 - 판단 기준으로는 경제제재조치의 항목별 경제적 목표의 달성 여부,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인한 무역 및 금융거래 전환 여부 등
 - 첫째는 ‘당사국 효과’로서 제재국과 북한과의 무역거래의 위축 초래
 - 둘째는 ‘제3국 효과’: 경제제재로 인한 북한의 제재국과의 무역 감소를 제3국과의 무역 증가로 상쇄할 가능성
 - ‘제3국 효과’는 제재로 인하여 북한의 무역 대상국이 제재국에서 제3국으로 단순히 ‘거래선 이전’만 이루어지는 경우와 제재로 인해 특정 무역 품목의 수출 대체국을 발굴하지 못하여 그 무역 품목의 수출이 중단되거나 또는 제3국에 다른 무역 품목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로 구분됨.

2.2. 유엔 안보리결의에 의한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토론

- 유엔 안보리결의에 의한 대북제재의 조항들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조항(결정한다, decide)과 구속력이 약한 조항으로 나누어지는데,
 - 구속력이 없는 표현들은 그 강도 순으로, 요구한다(demand), 요청한다(require), 촉구한다(urge), 촉구한다(call upon), 확인한다(affirm), 강조한다(underline) 등
 - 물론 유엔 안보리결의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가가 유엔 안보리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회원국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
- 대북경제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중 구속력이 강한 주요 금지 조항
 - 북한의 (소형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 거래
 - 핵 또는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의 거래 및 금융서비스, 공적 금융지원, 관련 개인 및 단체 또는 그 대리인(단체)에 대한 제재
 -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 사치품 항목 지정은 2094호부터 촉구 사항으로 도입)
 - 선박 검색 관련 조항
- 대북경제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중 촉구 수준의 주요 조항
 -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촉구(call upon)
 - 회원국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무기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회원국이 수출과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조항 도입
 -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신규 권고 7을 환영하고(welcome), 회원국들이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동 기구의 권고 7에 대한 해석안내서 및 관련 지침문서들을 적용할 것을 촉구(urge)하면서 추후 이 분야로 제재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둠.

□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 UN 안보리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가 와해되지 않도록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핵무기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제재조치를 담은 것
- 2006년 말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 이후 현재까지 6년 이상 시행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조치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과 핵무기 폐기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압도적¹⁾
- 북한은 안보리결의 1874호에 의해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로 전용이 가능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2012년 2차례나 실행. 북한은 2013년 1월 통과된 안보리결의 2087호에도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2월 12일 제3차 지하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3월 7일 안보리결의 2094호가 통과되자 정전협정과 한반도비핵화선언의 무효화를 선포

□ 유엔 차원의 다자간 대북경제제재는 공식적인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대북경제제재의 양적인 효과가 일부 확인되고 있음.

- 이재호·김상기(2011)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수출은 제재시점(2006년의 1718호 및 2009년의 1874호) 이전에 비해 제재시점 이후에 감소
- 안보리결의 1874호에 의한 국제사회의 선박 검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일부 회피행위는 있겠지만, UN의 대북 무기 금수조치는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²⁾

1) 이재호·김상기,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 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1); 홍순직,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영향과 대응 방향,” 『통일경제』, 2009년 여름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9), pp. 36~45; 정형곤·방호경,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Marcus Noland, “The (Non)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Working Paper 08-12, December 2008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8);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Sanctioning North Korea: The Political Economy of Denuclearization and Proliferation,” Working Paper Series WP 09-4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9); Mary Beth Nikitin, Mark E. Manyin, Emma Chanlett-Avery, Dick K. Nanto and Larry A. Niksch,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mplic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CRS Report for Congress, R40684, July 1, 2009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2)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100%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제재로 인한 무기수출 감소치가 최대 수천만 달러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대북경제제재의 ‘추가적인’ 제재효과와 절대치가 그렇게 커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음. 장형수,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정책연구』, 봄호 통권 16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p. 86.

- 현 단계에서 대북경제제재는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는 제재의 효과성을 따지기 보다는 북핵을 폐기하라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측면이 더 중요할 것
- 안보리결의 2087호와 2094호에 강제성을 띤 금융제재 조항들이 생기고, 다양한 권고사항들이 새로 도입되었으나,
 - 아직 유엔 차원의 경제제재가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제재 단계에는 미달하고 있으며, 강제성을 띤 금융제재 조항의 실제 적용에 관련된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일부 국가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
- 북한의 외환거래는 주로 북한 무역회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므로 유엔의 금융재제조치들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북한의 금융거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

2.3. 한국의 5·24 조치로 대표되는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토론

- 한국의 2010년 5·24 대북경제제재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의 기존 투자를 제외한 모든 남북 간 경제관계를 단절한 조치
- 현재까지 이러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제재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북한은 공식적으로 천안함 공격 사실 자체를 부정
- 비록 공식적인 제재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지만 5·24 조치는 그 자체로서 북한에 상당한 정도로 제재의 ‘당사국 효과’를 가져다주었을 것임.
- 실제로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에 중단된 금강산과 개성관광수입까지 더하면 북한이 입은 ‘외화획득 감소분’은 연간 수억 달러로 추정
- 그러나 5·24 조치의 ‘제3국 효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
- 5·24 조치로 인한 남북교역의 감소를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 증가로 “얼마나 쉽게 전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논란거리

- 5·24 조치 이후에 북한의 대중 무연탄, 철광석 등 광산물 수출이 급증.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급감. 이는 한국의 5·24 조치로 인한 북한의 외화획득 감소분을 중국에 대한 광산물 수출 증가를 통해 보충하고 있음을 의미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5·24 조치가 북한의 외화부족을 통해 경제적 타격을 주려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것
- 그러나 북한이 5·24 조치로 인해 비록 외화부족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농산물과 수산물의 대체수출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아예 대중국 수출품목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 이런 관점에서 보면 5·24 조치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2.4. 일본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토론

- 현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대북경제제재는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당국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인정하고 생존 일본인들을 일본에 송환한 이후에 오히려 공론화
- 요코타 메구미의 가짜 유골 문제와 2006년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제1차 핵실험으로 더욱 강화
- 현재 일본은 평화 시에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조치의 거의 대부분을 이미 시행
-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도 북한의 변화를 유인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함.
 - 일본 대북경제제재조치의 당사국 효과는 상당했으나, 제3국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 이석(2010)은 일본의 대북 무역제재로 인해 북한이 당사국 효과로 인한 무역 감소를 경험한 것은 확실하지만 일본으로의 수출 감소는 상당부분이 한국으로의 수출 증가로 대부분 만회되는 제3국 효과가 있다고 분석

2.5.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토론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1950년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각 조치들이 매우 촘촘하게 서로 얽혀있어서 이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 미국이 2008년 10월 북한을 국무성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실제로 대북제재조치의 효력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었음.
-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외교적 목적도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논의하기가 역설적으로 더 어려워짐.
- 비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여러 가지 외교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당사국 효과가 막대한 것도 또한 확실
 - 세계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무역 단절과 최혜국 대우 적용 제외가 북한 경제에 매우 큰 악영향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음.
- 본 발제에서는 미국의 직접적인 대북경제제재조치들의 효과성을 논의하는 대신,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다시 대두되고 있는 미국 및 서방권의 직·간접적인 대북 금융제재의 잠재적인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함.
-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금융기관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제재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금융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국내법(애국법 311조)에 의거하여 마카오에 있는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였을 뿐이었는데도 그 조치는 큰 파장을 불러옴.
- BDA와 거래하고 있던 대다수 은행들은 미국은행과의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BDA와의 거래를 즉각 중지하였고,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에 개설된 북한 계좌도 동결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게 됨.
- 전세계 금융거래의 70% 이상이 달러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은행과의 국제금융 거래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은행은 거의 없기 때문³⁾

3) BDA 금융제재의 내용과 그 해결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장형수,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pp. 67~69를 참조.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제재를 실제로 단행하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대북 협상에서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
- 그런데 이미 2005년 9월 미국의 BDA 금융제재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대북금융제재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음.
-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제재를 회피할 수 있으며, 북·중 접경지역 거래에서는 금융기관이 배제된 현금 거래가 관행화
- 북한은 전신환, 이체 등 은행 송금거래에서 차명계좌를 적극 활용. 새로운 무역회사나 은행을 설립하여 새로운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 대량 현금 거래 적발, 차명계좌 적발 등은 금융기관 주재국(중국)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음.
- 북한이 수출하는 경우는 북한은 수출대금을 북한 기업 관계자나 현지 중국인 대리인을 통해 외화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선호
 - 외화 현금의 일부는 중국을 출입하는 북한 기업·무역회사 관계자들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며, 나머지는 중국에서 북한 현지 기관 및 관계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물품 구입을 위해 사용
 - 이처럼 현금거래가 관행화되어 될 수 있는 이유는 북·중 변경지역 중국 업체들이 은행거래를 회피함으로써 송금수수료 절감, 세금 회피, 신용장 개설 회피 등의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⁴⁾

3. 대북경제제재의 향후 전개과정 전망

3.1. 단기 전망

- 2012년 6월 유엔 안보리에서 발간한 1718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의 유엔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한 평가
- “(UN 안보리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제재의 이행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이 계속되

4) 이종운, “북·중 접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 『경협물류』, 제9권 27호 (남북물류포럼, 2009); 장형수,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pp. 82~83.

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대북제재는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빈도를 줄이게 하였으며, 불법적인 거래를 매우 어렵고 비싸게 만들었다.”⁵⁾

- 이는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와도 일치
- 비록 대북경제제재의 ‘정치·외교적’ 목적이 달성되지는 못하였지만 제재의 ‘경제적’ 목적은 일정부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 하지만 경제제재의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명확한 당사국 효과가 시현되었고 해서 제재대상국이 이를 회피해가는 제3국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됨.
 -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한때 효과적이었던 경제제재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제재대상국의 적응이 완료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 향후에도 유엔 차원의 대북경제제재만으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핵무기 폐기라는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 중국은 공개적으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공언
-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인 중국이 ‘관리’ 내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을 것
-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에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주변국의 군비경쟁, 군사적 개입,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차단 등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한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를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임.
-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계속 결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국익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안보리 제재의 ‘점진적인’ 강화에 동의할 것임.

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S/2012/422 (14 June 2012).

-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핵실험 등에 대한 제재가 비록 그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일탈행동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우리의 5·24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굴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북한 정권이 그들이 부정한 천안함 공격을 인정하라는 남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태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로서는 최악의 경우
-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 관련해서도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신변안전보장 등 우리 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우리 측이 3가지 조건을 실질적으로는 신변안전보장으로 축소할 때까지 버텼던 사례
- 5·24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에 북한이 중국으로의 광산물 수출을 지속하여 외화부족분을 계속 충당해나갈 수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
-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광산물 ‘밀어내기’는 내부 부작용을 초래하여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
- 한편 북한이 임금수준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국과의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통해 이미 한국과의 위탁가공교역을 대부분 대체했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제기
- 최근 북한은 외화획득이 손쉬운 관광산업 진흥과 해외 근로자 파견을 통해 새로운 외화획득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5·24 조치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북한의 전체 외화수급을 세밀히 분석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⁶⁾
- 북한은 일본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는 이미 적응을 마친 상태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그 정확한 효과를 논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며,
-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는 당사국 효과는 있으나 그 대부분이 제3국으로의 대체효과에 의해 상쇄되어 제재의 종합적인 ‘경제적’ 효과도 미미

6) 북한의 전체 외화수급에 대한 연구는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09)가 있으나 분석 대상 기간이 2000년부터 2008년이어서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3.2. 미국의 독자적 대북금융제재와 중국의 반응 전망

-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가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미국의 독자적 대북금융제재가 중국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경우임.
- 미국 재무부는 국내법인 애국법 311조에 입각하여 “확실한 증거가 없이도” 북한과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제재수단을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
- 북한이 이미 무역의 대부분을 현금거래로 바꾸었고, 일부는 차명거래 등으로 중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대북금융제재는 북한 당국에게 추가적인 ‘불편’을 가져다 줄 것임.
- 애국법 311조의 적용은 거의 대부분 중국 금융기관이 표적이 될 것이 확실하며, 만약 미국이 이러한 제재를 실제로 실행하려고 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의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임.
- 미국 재무부가 2007년 3월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자금세탁기관’으로 공식 지정하자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한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음.
- 미국은 대북금융제재 때문에 이미 ‘불편’을 겪고 있는 북한을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 사이에서 고민
⇒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고민은 결국 십중팔구는 ‘점진적인’ 대북제재 강화로 귀착될 것으로 보임.

3.3. 중장기 전망과 대한민국의 국익에 대한 도전

- 대북경제제재의 향후 전개과정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매우 어려운 과제
- 이는 북한의 대응,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 NPT체제의 미래와도 관련되기 때문
- NPT체제를 유지하려는 현재의 국제질서 하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보유가 지속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
-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의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은 철저히 차단하려 할 것임.

- 유엔 안보리결의에 의한 대북제재조치들은 비록 북한의 핵폐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 지라도 북한 핵의 제3국으로의 확산 방지에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
- 우리에게서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우선 순위는 비핵화보다는 비확산일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새로이 등장한 박근혜정부가 5년간 직면할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임.
- 시간은 누구 편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와 장기 전략의 존재 유무
 - 최악의 경우, 대화와 협상이 사라지고 오직 압박과 위협만이 남을 경우에 과연 시간이 지나면 누가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
 - 시간이 지나면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가?
 - 시간이 지나면 북한 정권의 핵보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은 어떻게 되나?
 - 우리의 국익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국익은 다를 수 있음.
 - 북핵 폐기를 위한 우리의 장기 전략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것은 현실성이 있는 전략인가?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 드 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통일정세분석 2013-05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3년 5월
발행일	2013년 5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

